##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129 제출연월일: 2024. 6. 28.

제 출 자:정 부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,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

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.

제4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
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4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0조(벌칙) ① (생 략)	제40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		
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			
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			
한다.			
1. 제7조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	<u>&lt;</u> 삭 제>		
명령을 위반한 자			
2. • 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
제42조(과태료) <u>&lt;신 설&gt;</u>	제42조(과태료) ① 제7조제2항에		
	따른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		
	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		
	를 부과한다.		
<u>①</u> (생 략)	<u>②</u> (현행 제1항과 같음)		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	③ 제1항 및 제2항		
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			
역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.			